

IV. 손해배상

1. 법 규정

피해자는 언론보도 등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을 후 6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4조 제1항). 신청인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6항).

실무상으로는 통상 신청인은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단독으로 제기하는 것보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와 병행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

2. 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사건 처리 현황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발표자료(별첨자료2. 참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손해배상으로 피해구제되는 비율이 감소 추세에 있는바, 전체 손해배상청구사건 중에서 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비율은 2008년 12.7%, 2009년 7.2%, 2010년 4.1%로 해마다 감소하였고, 특히 2011년 6월말 기준으로는 2.9%로 나타났다. 이는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조정의 특성상 사실관계의 파악이 힘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의 비율이 26.8% ~ 52.1%인 것을 비교하면 약 1/4 ~ 1/6.5 정도에 불과하다.

위원회의 조정액 또한 법원의 인용액과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인데, 위원회의 조정액은 법원의 인용액과 대비하여 2008년 약 1/7(조정액 333만원, 인용액 2,340만원), 2009년 약 1/6.5(조정액 359만원, 인용액 2,348만원), 2010년 약 1/13(조정액 183만원, 인용액 2,424만원) 수준이고, 2011년 6월말 위원회의 손해배상 조정액의 평균액은 99만원에 불과하다.

3. 손해배상 현황에 대한 배경분석

위와 같이 위원회의에서 손해배상으로 피해구제되는 비율이 낮고 그 금액 또한 법원의 손해배상 인용액에 비하여 미미한 원인은 여러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첫째로 조정과 소송이라는 제도적인 차이점으로 인하여 인격권 침해 수위가 낮은 사건은 소송이 아닌 조정에서 주로 해결되고 이와 반대로 인격권 침해 수위가 높은 사건은 고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조정보다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점, 둘째로 언론사로서는 조정과정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기사삭제를 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재부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러한 관행을 많이 따르고 있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동일 사건에서 위원회 결정액과 법원 인용액이 동일하게 나타난 비율이 50%에 달하는바, 이는 법원이 위원회가 내린 결정액을 존중하고, 이를 판결에 적극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 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사건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비율은 작년과 올해 6월말 기준으로 5%도 되지 않고 있어, 법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위원회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로 합의하면서 손해배상청구사건을 포기 내지 취하시킴으로써 피해구제율을 높이려는 것보다는 금전으로 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에 대해 인색한 언론사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위원회가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통상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증거조사를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 언론중재법상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고 훈시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심리기일을 연장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격권 침해가 성립하는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이 적극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손해배상 액수 산정 시에 지나치게 낮은 액수를 배제하고, 신청인의 요구와 법원의 인용액을 참고하여 사건별로 적절한 액수를 산정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되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언론 분쟁 해결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이다. 분쟁 당사자 간에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언론분쟁의 조정자는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의 원인과 쟁점을 파악한 후 유사한 사례에 관한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결정 선례를 참고로 하여 분쟁 당사자 모두가 대체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내용의 조정안을 만들어서 열의와 인내심을 가지고서 설득한다. 그 과정에서 최초의 조정안은 변경되거나 수정을 거칠 수도 있다. 조정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의 조정안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불성립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합의 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구분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어진다.

언론 분쟁의 조정자인 중재위원이 위와 같이 적극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조정자로서의 공명정대성, 기밀성, 정직성, 전문성 등의 인간적인 덕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은 물론이고 실무적으로도 다양한 조정 기법을 연구하고 숙련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 조정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상의 요구와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 내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라는 헌법상의 요구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명칭이나 조문의 내용상 언론 기관 등의 언론보도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실무상으로는 언론 표현의 자유 보장보다 개인의 권리구제에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을 종종 보게 된다. 개인의 권리 구제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언론 기관 등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법원의 누적된 판결에 의하여 일응의 기준은 세워져 있다고 본다. 즉, 대법원판결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